

노사발전재단 뉴스레터 인도네시아

- 3차 -



- 법무법인(유)세종 이대호 변호사

인도네시아 근로관계 해지 관련 분쟁 해결 절차 개관

○ 인도네시아 근로관계 해지 분쟁해결 절차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 제기 시 해고에 관한 분쟁은 1차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의 조력 가능) 간 협의 및 2차적으로 지방노동청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하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합의 시도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해고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인도네시아 노사관계법원(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 “PHI”, 이하 “**노동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만약 근로자가 위와 같은 1차 및 2차적 분쟁 해결 수단을 먼저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사관계분쟁해결법(U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제83조에 의하여 소송은 각하된다. 위와 같은 1차 및 2차적 분쟁 해결 절차는 필수적 사전 조치 수단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의 제기

해고무효소송의 관할은 당해 해고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이 가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은 인도네시아 각 주(州)의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관할 노동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소장 원본 및 사본 7부
2.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 관련 의사록의 원본 및 사본 7부
3. 위임장 원본 및 사본 4부 (원고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4. 원고의 신분증(KTP)

○ 절차 진행 개관

소송의 진행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 진행 절차 개관]

1. 지방노동법원에 원고의 소장 접수
2. 지방노동법원 실무관이 제출된 서류 검토
3.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었음을 확인한 관할 지방노동법원장은 해고무효소송의 진행을 승인
4. 지방노동법원 실무관이 서류 검토 후, 사건 진행을 위한 소송비용 안내서 송달
5. 원고의 소송비용 납부 및 노동법원에 영수증 제출
6. 지방노동법원 실무관이 소장 부분 등 서류 송달
7. 해당 지방노동법원 내부 절차로서 재판부 배당
8. 재판부가 서류 검토 및 첫 번째 변론기일 지정
9. 지방노동법원 실무관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10. 소장 부분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11. 답변서 부분을 송달받은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 제출
12.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제출
13.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등
14. 변론 종결
15. 선고

- 재판부는 첫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심리를 종료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절차상 쟁점 및 고려사항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고려가 필요하다.

[절차상 쟁점 또는 고려사항]

- 근로자의 입장
 - a.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부적법을 입증할 만한 서면 증거나 증인 등을 확보하였는지
- 사용자의 입장
 - a.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가능성 검토
- 고려사항
 - a. 실무적으로 증인 신문을 통한 주장 및 항변 내용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사정을 이해하여야 함
 - b. 해고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서류 등 서면 증거를 잘 구비하여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짐
 - c. 노동법원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하여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음